

—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문화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한 면복지회관 효율적 운영
- 일부 복지회관만 적용되는 조례를 타 복지회관에도 적용.

3. 주요내용

- 면복지회관 ⇒ 읍·면복지회관으로 변경(제명, 관련조항)
- 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: 면장 ⇒ 읍면장으로

4. 참고사항

- 타 시군복지회관설치조례

5. 검토의견

-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해평면 복지회관이 설치운영되면서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, 그 후 산동복지회관이 준공 운영되고, 기타 읍면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조례 시행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.
- 단순 명칭변경과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,
- 면단위 지역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며, 기타 조례와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